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2026년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모집 공고문(제한경쟁)**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산업 육성분야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을 통해 기업과 대학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목적**

-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융복합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특성화과정을 개발하여 “기업과 대학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전문 인력난” 해결

**2. 사업 개요**

- 사업분야
  -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산업
    - 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
  -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육성에 필요한 분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기간 : 2026. 3. 1. ~ 2027. 2. 28.(12개월)
- 사업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4년제 대학교
- 지원대상 : 25년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개설 11개 과정
  - 대학에서 기업(70% 이상 참여) 및 연구기관과 교육과정 졸업생(이수자)의 채용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에 따라 개설

### 3. 신청대상 : 대학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 ○ 신청주체

- 대학 : 도내 4년제 대학으로 지역산업 육성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
- 기업 : 도내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지역산업육성 분야의 기업 및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정 졸업생(이수자)의 100% 또는 일정비율(50% 이상) 채용을 약속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 연구기관은 도내 소재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한정함.

#### < 사업 참여기업 기준 >

- ◆ 우수기업이 많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우선 지정 예정
  - 월드클래스300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선도기업 등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내 기업
-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 분야 기업(단, MOU 체결 등 도내 투자예정인 기업과 연구기관 참여 가능)
- ◆ 참여기업은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충족기업 우대(우량기업 선정)
- ◆ 사업 운영 및 교육생 취업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
  - \*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참여기업 적합여부 판단

#### ○ 구성방법

-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70% 이상) 및 연구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 대학은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인턴십 또는 현장실습, 국내·외 현장학습, 교육이수자 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명시

### 4. 교육과정 유형

#### ○ 취업 확정형 과정을 우선하되, 취업 혼합형 과정 편성 가능

- 취업 확정형 교육과정 : 교육생 전원을 기업으로부터 채용을 약속 받은 취업 확정인원으로 편성
- 취업 혼합형 교육과정 : 교육생의 50% 이상을 기업으로부터 채용을 약속 받은 취업 확정인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50% 미만을 기업으로부터 우선 채용을 약속 받은 취업 조건인원으로 편성  
(예시 : 30명 정원 시 취업확정인원 최소 15명(50%) 이상 구성 요망)

○ 취업 확정인원

- 졸업일부터 **최소 2년이상 사업 참여기업 또는 도내 기업에 채용되어 근무하여야 함.**
- '취업연계 학생지원금(이하 학생지원금)'은 '등록금 지원형', '취업지원금 지원형' 중 선택 가능
- 과정 이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 또는 도내기업에 취업의무 위반 시, '등록금 지원형', '취업지원금 지원형' 모두 '학생지원금' 지원액의 100%를 반납

○ 취업 조건인원

- 졸업일부터 **최소 2년이상 사업 참여기업 또는 도내 기업에 채용되어 근무하여야 함.**
- '학생지원금'은 '등록금 지원형', '취업지원금 지원형' 중 선택 가능
- 과정 이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 또는 도내기업에 취업의무 위반 시, 학생지원금 반납

○ 기업 및 연구기관

-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의 선발기준 채용 또는 미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청서에 제시하여야 함.
- 졸업 후 해당기업 미취업 최소화를 위해 구체적인 채용조건(연봉 및 복리후생, 근로조건 등)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기업 및 연구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졸업생에 대한 채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구 분   |              | 취업 확정형 과정  | 취업 혼합형 과정   |
|-------|--------------|--|---|
| 인원구성  |              | 교육생 100% 취업확정인원으로 편성   | 취업확정인원(교육생 50% 이상)과 취업조건인원(50% 이내)으로 혼합 편성  |
| 참여학생  |              | 보증보험 증권제출(보험료 지원)  | 보증보험 증권제출(보험료 지원)   |
| 지원금   | 취업연계 학생 지원금* | '등록금 지원형' 또는 '취업지원금 지원형' 중 택일<br>- 학생지원금의 90% 이내 지원 (기업·대학 10% 이상 부담)          | '등록금 지원형'<br>- 확정인원 : 학생지원금의 90% 이내 지원 (기업·대학 10% 이상 부담)<br>- 조건인원 : 학생지원금의 60% 이내 지원 (기업·대학·학생 40% 이상 부담)<br>'취업지원금 지원형'<br>- 확정/조건인원 : 학생지원금의 90% 이내 지원 (기업·대학 10% 이상 부담) |
|       | 직·간 접비       | 최대 소요액(300백만원)의 70% 이내 지원 (기업·대학 30% 이상 부담)                                    |   |
| 의무 사항 | 기업체          | 졸업생 100% 채용 의무   | 확정인원 : 졸업생 100% 채용 의무<br>조건인원 : 우선채용 의무   |
|       | 졸업생          | 확약·도내 기업 취업의무(참여기업 2년 이상 근무) 위반 시 '등록금 지원형', '취업지원금 지원형' 모두 지원받은 학생지원금 100% 반납 |   |
|       | 대학교          | 수요기업 및 연구기관 확보,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참여학생 이탈방지 등 리스크 관리 및 졸업 후 취업연계 방안 강구)        |   |

- \* “취업연계 학생지원금”은 졸업 후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에 의무 근무를 전제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록금 지원형’과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지원금 지원형’으로 나누어지며, 참여학생은 지원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택 1 필수)
  - 등록금 지원형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 등록금 지원형은 석사과정만 신청 가능
  - 취업지원금 지원형 : 도내기업 취업을 전제로 하는 취업지원금(학기당 240만원 or 300만원)
    - ※ 사립대학교 학부과정(취업지원금 300만원), 그 외 240만원

## 5. 사업비 지원 및 운영

### ○ 교육과정당 지원 규모

- 교육과정당 학생지원금 지원은 국립대와 사립대간 등록금 편차 등을 고려해 정률로 지원
- 직·간접비는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최대 210백만원(보조금+민간부담금) 기준으로 직·간접비 소요액의 30% 이상을 대학 및 기업이 의무 부담
  - ※ 선정평가결과 및 지원금 예산에 따라 과정별 지원규모 결정
- 사업계획 접수 후, 지원금 신청액 규모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지원규모 결정
- 매칭 펀드(민간부담금)는 신청서 제출 시 현금 및 현물출자 협약서 제출

### ○ 교육생 취업연계 학생지원금 지원

- 재학생 : ‘등록금 지원형’, ‘취업지원금 지원형’ 중 선택가능
  - [등록금 지원형]
    - 취업 확정인원 : 학생지원금의 90%이내 지원(기업·대학 10%이상 부담)
    - 취업 조건인원 : 학생지원금의 60%이내 지원(대학·기업·학생 40%이상 부담)
  - [취업지원금 지원형]
    - 취업 확정/조건인원 : 학생지원금의 90%이내 지원 (대학·기업 10%이상 부담)
- 재직자 : “등록금 지원형”만 참여가 가능하며 학생지원금의 60% 이내 지원 (대학·기업·학생 40%이상 부담)

○ 교육과정 직·간접비 지원

- 1개 교육과정당 직·간접비 소요액(최대 300백만원)의 70% 이내 지원
- \* 대학 및 기업에서 직·간접비 소요액의 30% 이상 부담  
(민간부담 30% = 현물 20% + 현금 10% 이상)
- \* 직·간접비 산정 시 기준(인원에 따른 운영비 차등) :  
40백만원 + (8.5백만원 × 지원학생 수(최대 20명)) = 210백만원
- \* 참여인력, 실습장비, 강사인력 등 현물 부담 가능(기업 현물 불가)

○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학업장려금 지급 가능

- 대학,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우수학생 유치 및 학업 동기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매월 또는 학기별 일정 금액의 학업장려금 지원 가능

6. 융복합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 편성기준

- 교육기간 : 1년 과정  
· 단, 참여학생은 졸업 시까지 휴학 불가(휴학 시 중도포기)

- 선발대상

- 학 부 생 : 미취업자로 기존 참여 학생 또는 4학년 진학예정자
- 대학원생 : 미취업자로 기존 참여 학생 또는 2학년 진학예정자
- 재 직 자 : 기업체 2년 이상 근무자로 기존 참여학생(과정별 20% 이내)

- 선발기준

- 학점, 자격증, 외국어 성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과 대학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기업 맞춤형 융복합 교육과정 개설

- 대학교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내용에 맞춰 1개 학과 또는 다수의 학과와 연계된 융복합 특성화 교육과정 개설
- 기업과 협의하여 교육과정 개발, 강사진 구성, 현장실습 및 인턴십, 산학 프로젝트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 교육과정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2년 이내(4학기)에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가능(예: 3학기 이론교육 후, 1학기 현장실무 교육)

○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수요기업 또는 산업현장 임직원, 연구기관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위촉하여 교육생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
- ※ 강사진 구성 시 외부 전문가의 강의비율을 기업과 협의하여 결정
- 산학연 프로젝트 또는 팀 프로젝트 중 택1하여 자율필수지표로 수행해야 하며, 2가지 지표 모두 기업 참여 필수임. 산학연 프로젝트와 팀 프로젝트 운영시 1개 참여기업당 학생은 최대 4명으로 구성

7. 심사 및 지정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 : 5명 내외
- 구성 : 도내외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청한 대학 및 기업 관계자 제외

○ 평가방법 및 선정

-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검토 시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실시
- 평가방법
  - .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순위 결정 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최종 확정
  - . 서류검토 → 서면평가 → 지원대상 결정(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서류검토(전북TP) | 서면평가(평가위원회) | 지원대상 결정(전북특별자치도) |

- 선정방식 : 평균 60점 이하인 과정은 지원 순위에서 제외
- ※ 평가결과에 따른 직·간접비 차등 지급

○ 평가항목 :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붙임 1” 참조

## 8.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제본자료 제출 및 전자파일 송부

| 연번 | 구 분      | 제출 서류                    |
|----|----------|--------------------------|
| 1  | 제본, 전자파일 | [양식 1] 사업계획서 8부(첨부파일 포함) |
| 2  | 제본, 전자파일 | [양식 2] 증빙자료 8부(첨부파일 포함)  |
| 3  | 전자파일     | 제출 공문                    |
| 4  | 전자파일     | [양식 3] 참여기업 리스트          |
| 5  | 전자파일     | [양식 4] 사업비 편성 세부 현황      |

- 제출기한 : 2026. 2. 05(목) ~ 2. 1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파일 선제출 후 제본자료 접수 요청
- 선정평가 : 2026. 2. 24(화),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처 :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 제본 제출 주소 : (54853)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본부동 4층 기술사업화팀
  - 전자파일 : kimhh@jbtp.or.kr
- 신청서식 : 별도 서식 참조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btp.or.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관련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과 대학협력팀 (☎ 063-280-4607)  
전북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 063-219-2161)

## 9.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상기 공고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붙임 1. 신규선정평가 평가표 1부.
- 2. 사업비 작성 가이드라인 1부. 끝.

## 【붙임 1】 신규선정평가 평가표

| 평가항목 및 배점    |                              | 평가내용   | 점수       |
|--------------|------------------------------|--|----------|
| 정량지표<br>(40) | 참여학생<br>모집계획<br>(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학생 모집정원 최소 개설기준 초과 (10)</li> <li>▫ 참여학생 모집정원 최소 개설기준 이하 (8)</li> </ul>  | 점        |
|              | 취업률<br>(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취업자 / 취업대상자) × 5</li> <li>▫ (도내 취업자 / 취업대상자) × 10</li> </ul>  | 점        |
|              | 그간 취업<br>연계 실적<br>(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과정 중 직전 최종평가 등급 “우수” (15)</li> <li>▫ 기존과정 중 직전 최종평가 등급 “보통” (12)</li> <li>▫ 기존과정 중 직전 최종평가 등급 “미흡” (9)</li> </ul>                       | 점        |
| 정성지표<br>(60) | 기업맞춤형<br>교육과정<br>운영<br>(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적정성, 차별성 및 우수성</li> <li>▫ 학생 및 기업 수요에 대한 교육과정 반영 노력</li> <li>▫ 내/외부 참여인력 구성 및 역량의 적정성</li> <li>▫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li> </ul> | 점        |
|              | 우수기업<br>참여여부<br>(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기업 확보 여부</li> <li>※과정별 산업 환경에 따른 우수기업 고려</li> </ul>   | 점        |
|              | 기업과의<br>취업연계<br>및 실적<br>(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현황</li> <li>▫ 기업과 학생 간 유대 강화 계획의 적정성</li> <li>▫ 리스크 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li> </ul>  | 점        |
|              | 대학교<br>사업수행<br>의지<br>(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응자금 확보의 적정성</li> <li>▫ 본 사업 교육과정 수료를 위한 필수교과과정 편성 현황</li> </ul>  | 점        |
|              | 사업계획서<br>완성도<br>(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의 우수성</li> <li>- 목표설정 및 추진 방향 및 전략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의 논리성, 효율성 및 우수성</li> </ul>   | 점        |
| <b>합 계</b>   |                              |  | <b>점</b> |

## 【붙임 2】 사업비 작성 가이드라인

| 비목         | 세 목                          | 세 세 목                 | 내 용  |
|------------|------------------------------|-----------------------|--|
|            | <b>공통사항</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국비, 도비, 시·군비) : 인력양성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기초 자치단체(시·군) 장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통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비(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 제외)</li> <li>◦민간 부담금 편성 : 장학금과 직접비로만 편성 가능</li> <li>◦지원대상 : 사업 참여학생. 단, 사업 참여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에 대한 직접 지원 불가</li> </ul>  |
| <b>장학금</b> | <b>등록금 지원금</b>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경비</li> <li>◦학기 중 사업에 참여·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급 가능</li> <li>◦참여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에 대한 지원 불가</li> <li>◦장학금은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직·간접비로 변경 불가</li> <li>◦직·간접비 산출 시 장학금은 제외하고 계산할 것</li> <li>◦참여학생은 등록금 지원형, 취업지원금 지원형 중 반드시 택하여 지원받아야 함</li> <li>◦취업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조건으로 마지막 학기의 직전학기(학3/석1)에 등록금 또는 취업지원금에 대해서만 선집행으로 지원이 가능함(자격증 취득비, 우수학생 학업 장려금, 국외현장학습비 등 등록금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선집행 불가).</li> <li>또한 등록금(취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만큼 의무이행을 해야 하는 사업의 기본 지침에 따라 가을학기부터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도 4학기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받게 되면 4학기만큼의 의무이행이 발생함</li> <li>※ 외국인 학생 지원의 경우 대학에서(또는 산단) 4학기 장학금을 보관하며 취업 후 의무이행기간 6개월 단위로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함.</li> </ul> |
|            | <b>인건비</b>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을 위하여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급여, 시간외 수당 등</li> <li>◦최저 급여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을 준함.</li> <li>◦기존 전임교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지급 불가</li> <li>◦겸임교원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불가(전문가활용비 사용)</li> <li>◦전담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li> <li>◦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li> <li>◦인건비는 출산전후휴가, 참여연구원의 퇴직에 의한 변동의 경우에만 증액 가능</li> <li>◦인건비와 장학금의 중복지급 불가</li> </ul>  |
| <b>직접비</b> | <b>연구시설장비 (민간부담금만 편성 가능)</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협력 및 교육목적에 활용되는 실험, 실습 기자재 등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li> <li>◦산업체 수요 기반의 실습 장비(H/W, S/W)구축비</li> <li>◦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li> <li>※필요할 경우 민간부담금에서 편성 및 집행 가능</li> <li>※우수과정 인센티브에 한하여 300만원 이하 기자재 구입 가능</li> </ul>  |
|            | <b>교육 활동비</b>                | <b>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위원회</li> <li>◦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li> <li>◦교육과정 개발 및 선순환적 인재양성 프로그램</li> <li>◦산학교류강좌(전문가초청 등) 운영</li> <li>◦취업 역량 강화 지원(전공기술 기초/심화,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생산관리/재무 기초 소양 등)</li> <li>◦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의 경우 지원금 직접비의 15% 이내</li> <li>◦보증보험료 지원</li> <li>※산업체 수요 기반 교육을 위한 실습 장비(H/W, S/W)의 경우, 임대</li> </ul>  |

경비는 지원금으로 편성·집행 가능  
 ※교재 개발 및 행사 개최 시 사업명·로고 등을 명기하여야 함.  
 ※교내 소속 참여교원에 대한 강의, 교재개발, 학생 지도 등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불가  
 ※교재 개발 등의 경우 사업단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가능하며, ISBN 등록 자료의 경우 실적 인정 시 가점(1점) 제공  
 ※회의비 지원 불가, 숙박비 지원 가능  
 ※전문가 수당 지급 기준표  
 - 회의참석수당 : 최대 20만원  
 - 기술지도비(자문료) : 최대 30만원  
 - 강사수당 : 지급대상에 따라 수당 지급

| 강의 구분 | 지급대상  | 수당 (시간당) |
|-------|---|----------|
| 특강    | -전 장차관(급), 전 사립대학 총장(급)<br>-전현직 국회의원 및 대기업 총수(회장)<br>-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50만원     |
| 1급 강사 | -대학 : 조교수 이상 / 전문대학 : 부교수 이상<br>-기업 : 중역 책임연구원 이상<br>-전문가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br>-기타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해당 경력자<br>-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자 | 30만원     |
| 2급 강사 | -대학 : 전임강사 이상 / 전문대학 : 조교수 이상<br>-기업 : 선임연구원 이상<br>-기타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해당 경력자<br>(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해당 경력자)<br>-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자    | 20만원     |
| 3급 강사 | - 전임 이외의 외래 시간강사<br>- 외국어, 전산 등 학원 강사<br>-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자  | 10만원     |
| 내부 강사 | - 사업계획서 상의 참여인력으로 인건비 계상 시 포함되지 않는 자  | 10만원     |

\* 강의시간 산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함.

1시간 이하 : 1시간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2시간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시간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호와 같이 시간기준으로 가산하여 산출함.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 등별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지급함.

**학생지원금**

- **현장실습**  
 ◦현장 적응 능력향상을 위한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 지원  
 ◦사업단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가능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편성 가능  
 ◦현장실습 시 학생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등 지원 가능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준용(교육부 고시)  
 ※현장실습비 지급 기준표

| 구분       | 내용  | 비고    |
|----------|---|-------|
| 실습비(학생)  | 학생 1인당 최대 60만원(3만원/일)                             | 4주 기준 |
| 주거비(학생)  | 숙박비(실비) 지원,<br>최대 50만원                            |       |
| 지도수당(기업) | 기업당 최대 100만원<br>- (기본)학생1인 40만원 + (추가)학생1인당 10만원  |       |
| 안전장비 구입비 | 학생 1인당 최대 10만원,<br>동계복의 경우 학생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가능 |       |

|          |   | <p>※기업 소속인력에 대한 현장실습 지도수당의 경우,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세목에서도 편성 가능<br/>         ※산학연 프로젝트 또는 팀 프로젝트 지급 기준표</p> <table border="1" data-bbox="555 387 1422 495">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지도수당(기업)</td> <td>기업당 최대 70만원<br/>- (기본)학생1인 40만원 + (추가)학생1인당 10만원</td> <td></td> </tr> </tbody> </table> <p>- 취업능력강화지원<br/>         ◦학생 취업 능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어학능력 강화, 전공 관련 자격증 및 면허 취득 지원<br/>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편성 가능<br/>         ※취업능력강화지원 공통 가이드라인</p> <table border="1" data-bbox="555 689 1422 1400">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어학</td> <td>어학능력 향상 지원 : 영어, 일어, 중국어 등<br/>                     &lt;시험응시료&gt;<br/>                     - 성적향상 시 시험응시료 지원<br/>                     - 기준 점수 * 이상 획득 시 시험응시료 지원<br/>                     *토익 700점, 토익스피킹 120점, 오픽 IM1, J.L.P.T 2급(일본어), H.S.K 3급(중국어) 등<br/>                     &lt;강의 수강료 지원&gt;<br/>                     - 학원 및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br/>                     ※ 필수 요건<br/>                     ① 출석률 유지(90% 이상) ② 자체평가보고서 제출<br/>                     ③ 강의 종료 후 1달 내 시험 응시</td> </tr> <tr> <td>전공</td> <td>전공 관련 자격증 및 면허 취득 지원<br/>                     &lt;시험응시료&gt;<br/>                     - 합격 시 시험응시료 지원<br/>                     &lt;강의 수강료 지원&gt;<br/>                     - 학원 및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단, 동일 과목 재수강 지원 불가<br/>                     ※ 필수 요건<br/>                     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전공 관련 자격증<br/>                     ② 출석률 유지(90% 이상)<br/>                     ③ 자체평가보고서 제출<br/>                     ④ 졸업 시까지 시험 응시 증빙 제출</td> </tr> </tbody> </table> <p>◦한국어, 한국사, 한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제외. 단, 참여 기업이 요청 또는 전공능력강화에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p> | 구분 | 내용 | 비고 | 지도수당(기업) | 기업당 최대 70만원<br>- (기본)학생1인 40만원 + (추가)학생1인당 10만원 |  | 구분 | 내용 | 어학 | 어학능력 향상 지원 : 영어, 일어, 중국어 등<br><시험응시료><br>- 성적향상 시 시험응시료 지원<br>- 기준 점수 * 이상 획득 시 시험응시료 지원<br>*토익 700점, 토익스피킹 120점, 오픽 IM1, J.L.P.T 2급(일본어), H.S.K 3급(중국어) 등<br><강의 수강료 지원><br>- 학원 및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br>※ 필수 요건<br>① 출석률 유지(90% 이상) ② 자체평가보고서 제출<br>③ 강의 종료 후 1달 내 시험 응시 | 전공 | 전공 관련 자격증 및 면허 취득 지원<br><시험응시료><br>- 합격 시 시험응시료 지원<br><강의 수강료 지원><br>- 학원 및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단, 동일 과목 재수강 지원 불가<br>※ 필수 요건<br>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전공 관련 자격증<br>② 출석률 유지(90% 이상)<br>③ 자체평가보고서 제출<br>④ 졸업 시까지 시험 응시 증빙 제출 |
|----------|---|---|----|----|----|----------|---|--|----|----|----|---|----|--|
| 구분       | 내용  | 비고  |    |    |    |          |   |  |    |    |    |   |    |  |
| 지도수당(기업) | 기업당 최대 70만원<br>- (기본)학생1인 40만원 + (추가)학생1인당 10만원   |   |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어학       | 어학능력 향상 지원 : 영어, 일어, 중국어 등<br><시험응시료><br>- 성적향상 시 시험응시료 지원<br>- 기준 점수 * 이상 획득 시 시험응시료 지원<br>*토익 700점, 토익스피킹 120점, 오픽 IM1, J.L.P.T 2급(일본어), H.S.K 3급(중국어) 등<br><강의 수강료 지원><br>- 학원 및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br>※ 필수 요건<br>① 출석률 유지(90% 이상) ② 자체평가보고서 제출<br>③ 강의 종료 후 1달 내 시험 응시 |   |    |    |    |          |   |  |    |    |    |   |    |  |
| 전공       | 전공 관련 자격증 및 면허 취득 지원<br><시험응시료><br>- 합격 시 시험응시료 지원<br><강의 수강료 지원><br>- 학원 및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단, 동일 과목 재수강 지원 불가<br>※ 필수 요건<br>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전공 관련 자격증<br>② 출석률 유지(90% 이상)<br>③ 자체평가보고서 제출<br>④ 졸업 시까지 시험 응시 증빙 제출  |   |    |    |    |          |   |  |    |    |    |   |    |  |
|          | <p><b>우수학생<br/>학업장려금</b></p>  | <p>◦취업 및 프로그램 참여 독려를 위한 학업(취업) 장려금의 경우 지원금 직접비의 30% 이내 준수<br/>         ※ 민간부담금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가 지원 가능<br/>         ◦사업단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음.<br/>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편성 가능<br/>         ※ 학생이 직접 받았다는 수령 확인 증빙이 되는 경우, 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p>   |    |    |    |          |   |  |    |    |    |   |    |  |
|          | <p><b>산학협력<br/>네트워크<br/>구축</b></p>  | <p>◦학생 교육 및 취업을 목적으로 지역 기업 및 기관 등과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 등<br/>         예시) 산학교류회, 기업간담회, 기술지도(애로) 지원, 비참여교원(인력)의 국내외 현장학습 동반참가 지원, 팀프로젝트 등<br/>         ◦기술지도 및 기술애로지원 등<br/>         ※기업 소속인력에 대한 현장실습 지도수당의 경우, 산학협력 네트워크</p>   |    |    |    |          |   |  |    |    |    |   |    |  |

|                            |                   |  |
|----------------------------|-------------------|--|
|                            |                   | <p>워크 구축 세목에 편성 가능</p> <p>※기술지도 및 기술애로지원의 경우, 사업단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가능(단, 참여인력 수당 지원은 불가, 재료비, 인쇄비, 분석비, 외부 전문가 수당 등의 지원 가능)</p> <p>※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행사/교류비/간담회 등의 회의비는 허용함.</p>   |
|                            | <b>정산수수료</b>      | <p>◦외부 위탁 정산 수수료</p>   |
| <b>현장 학습비</b>              | <b>국내 현장학습비</b>   | <p>◦사업단과 관련된 전시회/학회 참가·참관, 기업 견학 등 국내외 현장학습</p> <p>※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교원(인력)의 해외출장여비 또는 참여학생의 실비 지원(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p> <p>※학회 등록비 지원 가능</p> <p>※학회 회원가입비 지원 가능. 단, 종신회원 가입비는 불가하며 참여학생의 포스터 및 구두 발표를 위한 필수 요건일 경우에 한함.</p>  |
|                            | <b>국외 현장학습비</b>   | <p>※전임교원만 참여하는 해외연수 및 출장 지원 불가</p> <p>※단순 해외견학 및 어학연수 지원 불가, 인솔 전임교원 참여 최소화</p> <p>※대학원 과정 학생의 해외 인턴십 및 1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지원 불가</p> <p>※국내외 현장학습 중 교육과정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경우, 행사 개최 비용은 현장학습비에서 편성 가능</p>  |
| <b>사업 관리비 (직접비 15% 이내)</b> | <b>사업추진비</b>      | <p>◦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이며 국내 출장여비, 사무용품, 연구환경 유지비품, 회의비, 홍보비, 수용비 등으로 활용</p> <p>※홍보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기념품 물품 : 1.5백만원(개당 3만원)이내로 가능. 관리대장을 두어 관리하여야 함.</li> <li>- 단체복 구입 : 3백만원(참여학생 1인당 10만원) 이내로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테크노파크 마크와 사업해당연도 인쇄 필수.(교육활동비-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현장학습, 현장실습,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비목에서도 편성 가능)</li> </ul> <p>※출장비는 대학 자체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p> <p>※물품 구입 시 지출서류, 검수사진, 사전 품의 등이 필요함.</p> <p>※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주관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 연구원 포함) 간의 행사 및 회의 개최 시 지원 불가. 단, 참여학생 참석 행사 및 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외부기관 참석 없이 회의비를 1만 5천원 이하로 집행 가능</p> |
|                            | <b>취업지원 활동지원비</b> | <p>◦참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취업지원 활동지원비는 사업단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 후 총괄책임자의 경우 연간 최대 50% 이내, 1인당 최대 400만원 이내 지급 가능</p> <p>※평가자 : 참여인력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평가하며, 총괄책임자 평가는 산학협력단장 또는 소속대학 학장 평가</p> <p>※평가방법 : 학생 지도, 교육개발 및 운영, 참여기업 발굴·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p> <p>◦지원금의 경우, 직접비의 8%를 초과할 수 없음.</p> <p>◦민간부담금에 한하여 사업단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보직수당, 활동수당 지급이 가능(단, 지원금(국비, 도비 및 시군비)으로 지급 불가)</p>  |
|                            | <b>간접비</b>        | <p>◦기관공통운영경비로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p> <p>◦지원금 직접비의 3%를 초과할 수 없음.</p> <p>◦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은 간접비를 관련 사업에 편성해서 사용</p>  |